

#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 진정민원 조사 결과 보고

## 1. 신고내용(8/21, 공무직 ●●,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)

- 국립중앙박물관(이하 중박)이 공무직 연장근로수당을 부적법하게 지급\*하고 있고, 이를 제기한 본인을 연장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처우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아 관련자 징계를 요청함

\* 민원인(●●●)은 연장근로수당(이하 '수당')을 당월 지급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했으나, 중박 행정지원과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개선 없이 계속 익월에 수당 지급 중

## 2. 조사결과

### □ 부당한 처우 관련

#### 《 부적절한 관리내역 확인결과 》

- 민원인 본인의 동의 없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주 5일로 근무를 편성하여 임금 축소(8월~),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연장 근로 편성을 제시
- 관련 지침 등 근거 없이 병가사용 시 7일 미만도 영수증 등 증빙 요구

\* 민원인은 이 외에도 중앙박물관 관리과가 ①(올해 중순)원래 미화에 사용하던 낙엽 청소기를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치 못하게 하였고, ②(8월 경) 38도 이상의 뜨거운 날씨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지적하였으며, ③(민원 제기 후)잠깐 앉아 있었는데 경위서를 쓰라고 요구, ④(9월 경)'왜 노조같은데 들어가서 (민원을)제기하냐?'라고 이야기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,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곤란

- (중박 입장) ①민원인을 연장근무 없이 주 5일 근무로 편성한 사유는 초과수당 발생 시 위법 원인을 사전에 없애기 위함으로 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민간조정관\*의 권유에 따른 처분이며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, ②공무직에게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등을 요구한 것은 공무직 전환 전부터 관례적으로 요구\*\*했던 것임

\* 고용부의 민간조정관은 일반인으로 수사권한이 없으며,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보조

\*\* 해당 사항은 민원인이 이미 사용한 연가 4일을 약 2달 후 병가로 변경 요청하였기에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료확인서나 영수증을 요구한 것으로 공무직 복무관리 때문이었다고 주장

- (검토의견) ①해당 분쟁은 계약서와 우리부 규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민원인의 주 5일 근무 편성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며, 임금과 직결\*되어 있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주 5일 근무를 편성한 것은 타 공무직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며 ②복무관리 차원이었다고 하나,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은 병가 사용 증빙요구 또한 부적절

\* 민원인의 경우 초과근무 없이 주 5일 근무편성 시 월급이 170만원 내외라 주장

## □ 연장근로수당 지급 행정처리 관련

### 《 수당지급 행정처리 확인결과 》

- 중박은 규정과 다르게 공무직에게 수당을 익월에 지급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익월에 지급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에 개선방안 검토 필요
- 고용부는 민원인의 임금체불 및 부당처우 신고를 혐의없음으로 종결예정\*
- \* 중박 담당자는 민원인의 서울지방노동청의 임금체불 신고로 고용부 조사를 받았으며, 고용부 담당자는 임금체불 및 부당처우 신고를 혐의없음 처리 후 종결예정이라고 답변(10.19)

- (중박 입장) 수당의 익월 지급은 입사 시 설명하였으며, 민원인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기 판단
- (운영지원과) 국민신문고 질의(6월 11일)에 대해 회신하며, 수당지급은 노사 협의사항으로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중박에 협의하라고 요청하였음
- (검토의견) 현재 업무절차상 수당의 익월지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없기에, 단기적으로는 계약내용 변경, 우리부 규정개정 등을 통해 위법소지를 없애고,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인 당월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수당지급 업무 시스템 개선 필요

### 3. 조치계획

- 연장 근로 제외 후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연장 근로 편성을 제시하고, 근거 없이 병가 증빙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무직을 관리한 국립중앙박물관은 ‘기관주의’ 조치
-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, 개선방안 등의 검토와 민원 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본부 운영지원과는 ‘구두주의’ 조치하고 소속기관 공무직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스템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요구(통보)